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CHINA NEWSLETTER

August, 2026

* 본 뉴스레터는 상해총영사관의 법률지원 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86-21-5208-2808 Fax. +86-21-5208-2807 Email. shanghai@jipyong.com www.jipyong.com

법무법인(유) 지평의 중국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CONTENTS

목차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86-21-5208-2808 Fax. +86-21-5208-2807 Email. shanghai@jipyong.com
Copyright 2013 JIPYONG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유) 지평의 중국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 법률 칼럼 ■

01. 중국 진출 한국기업이 알아야 할 채권 추심 실무
02.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을 위한 EU CSDDD 대응 가이드

■ 외부 기고 ■

01. 중국 '저명상표'는 훈장이 아니라 방패다 (한국무역협회 상하이 지부 2026.07.09)
02. "계약서보다 '실질'을 보라"...중국 주재 한국 임직원의 노동관계 종료 실무 (월간노동법률 2026.7.13)

■ 최신 법령/판례 ■

1. 중국인민은행·국가외환관리국 「다국적기업의 위안화 및 외화 국경 간 자금 집중운영 업무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关于跨国公司本外币跨境资金集中运营业务有关事宜的通知), 2026.09.14. 시행 예정
2.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견수렴안)」(大型个人信息处理者个人信息保护规定 (征求意见稿)), 2026.09.07 의견 제출 마감
3.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공안부 「소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간소화 조치 규정」(小型个人信息处理者个人信息保护简化措施规定), 2026.09.01 시행 예정

■ 법률 칼럼 ■

01. 중국 진출 한국기업이 알아야 할 채권 추심 실무

들어가며

한국 본사가 중국 거래처에 납품을 마쳤는데 대금 지급일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내부 결재가 늦다'는 답이 오고, 다음 달에는 '투자금이 들어오면 지급하겠다'고 한다. 거래관계를 우려하여 일단 기다려 보지만, 그 사이 채무자는 법정대표자를 바꾸고 핵심 설비를 관계회사로 옮긴다. 뒤늦게 소송에서 승소해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판결문은 실질적 의미가 없게 된다.

중국에서의 채권 추심은 단순히 독촉(催告)의 강도를 높이는 일이 아니라, 시효·증거·관할·자산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프로젝트에 가깝다. 특히 한국 채권자는 계약과 증거의 일부가 한국에 있고, 채무자와 집행재산은 중국에 있는 경우가 많아 절차 선택이 채권 회수율을 좌우한다. 본고는 일반적인 물품대금·용역대금·대여금 등 기업 간 금전채권을 전제로, 계약서 조항 설계부터 재산보전·소송(중재)·집행까지의 실무 흐름을 정리하고자 한다¹.

1. 시효와 증거

가. 일반 소송시효

¹ 2025 년 중국 전국 법원은 약 2.2 조 위안을 집행으로 회수했다. 다만 같은 해 집행완료율(執行完比率)은 39.29%, 집행도달률(執行到比率)은 50.59%로 발표되었다. 강제집행의 규모가 큰 만큼, '승소'와 '전액 회수' 사이에는 여전히 자산 유무와 집행전략이라는 간극이 존재한다.

중국 민법전상 일반적인 소송시효는 권리자가 권리가 침해된 사실과 의무자를 인지하였거나 인지하였어야 했던 날로부터 3 년이고, 분할지급 채무는 마지막 회차의 이행기 만료일부터 계산한다.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자가 이행에 동의하거나, 소송·중재를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그 사유가 끝난 때부터 다시 계산한다.

시효 중단의 실무적 핵심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독촉했음'이 아니라, 이와 같은 독촉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이다. 따라서, 채무 변제 독촉에 관한 이메일, 위촉, 택배 수령증, 회신, 부분변제 내역을 함께 보존하고, 가능하면 채무자에게 잔액·변제기·분할일정을 명시한 채무확인서 또는 변제합의서에 공식 인감을 날인하게 해야 한다.

나. 보증채권

본채권의 3 년 시효와 보증기간은 별개다. 보증기간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불명확하면, 민법전상 기본 보증기간은 주채무 이행기 만료일부터 6 개월이다. 아울러, 계약서에 '연대보증'임을 명시하지 않으면 일반보증으로 추정되는데, 일반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소송·중재와 강제집행을 거치기 전에는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선소송 항변권을 가진다. 보증기간 내 권리행사 방식도 다른데, 일반보증은 보증기간 내에 주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중재를 제기해야 하고, 연대보증은 보증기간 내에 보증인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대표자나 관계회사의 보증이 붙어 있다면 본채무 독촉과 동시에 보증인에 대한 권리행사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회사가 보증인이 되는 경우 정관에 따른 동사회(이사회) 또는 주주회 결의가 필요하므로, 보증계약 체결 시 결의서를 함께 확보해 두어야 보증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을 방지할 수 있다.

다. 증거 확보

전자자료는 화면 캡처만 남기기보다 원본 기기, 대화 상대방의 계정정보, 송수신 시점, 첨부파일과 전체 대화 맥락을 함께 보존하는 편이 안전하다. 중국어 번역도 소송 직

전에 일괄 처리하지 말고, 핵심 문서부터 쟁점별로 정리해야 보전신청과 본안 청구금액을 신속히 확정할 수 있다².

2. 절차의 선택

중국 내 채권 추심에 있어 소송이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다. 채권의 다툼 가능성, 채무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있는지, 중재조항이 있는지, 보전할 자산이 있는지, 채무자가 이미 지급불능 상태인지에 따라 수단을 달리해야 한다. 한편 한국에서 흔히 활용되는 '형사고소를 통한 압박'은, 계약서가 존재하는 민사·상사 분쟁을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으로 다루지 않는 중국의 실무 원칙상 거의 효과가 없다는 점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 지급명령(支付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기층법원에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절차인데, 금액과 원인이 명확하고 다른 채무분쟁이 없으며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있어야 한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 후 5 일 내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채권관계가 명확·적법하면 수리일부터 15 일 내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채무자는 송달일부터 15 일 내 변제하거나 서면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품질하자, 반품, 상계, 대리권 흠결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면 지급명령이 오히려 시간을 늘릴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송과 재산보전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낫다.

나. 재산보전

² 중국 밖에서 작성된 공문서·신분관계 자료와 위임장은 문서 성격에 따라 증명절차가 필요하고, 외국어 서류에는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중국에서 2023. 11. 7.부터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되어, 한국 공문서는 원칙적으로 영사인증 대신 아포스티유 방식으로 중국 내 사용을 준비할 수 있다.

채무자가 자산을 이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 또는 소송 중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법원은 48 시간 내 결정을 해야 하고, 법원이 소송 전 보전조치를 취하면 신청인은 그때부터 30 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규정상 재산보전에는 통상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다. 소송 중 재산보전의 경우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액은 원칙적으로 보전 청구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지만, 소송 전 재산보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전 청구금액 상당액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보험사의 재산보전책임보험 보증서(보험료율은 대체로 보전금액의 0.1~0.3% 수준)로 현금 담보를 갈음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어 담보 부담이 크지는 않다. 다만 외국 법인은 보험 가입에 제약이 따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담보와 특정 가능한 재산 정보가 갖추어지면 보전 신청은 대부분 인용되며, 이 단계에서 본안 승소 가능성에 대한 실질심사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다³.

다. 합의

채무자가 합의 방안으로서 분할상환을 제안하면, 첫 회차를 즉시 지급하게 하고, 한 회차라도 지체하면 잔액 전부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미 보전한 재산은 상당한 변제금이 입금되기 전에 쉽게 해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라. 중재

개정 중국 중재법은 202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 중인데,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법원 소송보다 중재가 우선하며, 중재를 선택하더라도 재산보전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 CIETAC-SHIAC 등 본토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기관을 경유해 관할

³ 재산보전 단계에서는 신청인이 구체적인 재산 정보를 제시하여야 하고, 이후 승소 판결 집행 단계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피집행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법원에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는데, 통상 수 영업일 내에 법원으로 이송되고 상해 법원 기준 수리 후 3~4 주 내외에 재산보전 재정(裁定)이 내려지고 있다.

아울러 한국 기업이 선호하는 중재지 중 하나로서 홍콩 중재를 택한 경우에도 2019 년 '내지·홍콩 중재절차 상호협조 보전에 관한 안배'에 따라 본토 중급법원에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어, 실무상 본토 경로와 유의미한 속도 차이는 없다는 평가다. 아울러 개정 중재법은 중재지 제도를 명문화하여 중재지가 중재절차의 준거법과 관할법원, 판정의 국적을 정하는 기준이 되었으므로, 중재조항에는 기관뿐 아니라 중재지도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준거법을 한국법 등 외국법으로 정한 사건에서는 그 외국법의 내용을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중국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간이절차라 하더라도 신청부터 판정까지 실제로는 4~6 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정과 비용을 여유 있게 설계해야 한다.

마. 파산

기업법인이 만기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은 단순한 압박수단이 아니라 다수 채권자의 배당·순위를 다루는 집단절차이므로, 담보권과 예상 배당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파산신청이 수리되면 채권은 즉시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기한 내 채권신고를 챙겨야 하고, 보증인이 있다면 파산절차와 별개로 보증기한 내에 즉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아울러 주주가 인수한 출자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면 미출자 금액을 한도로 주주에게 직접 변제를 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바. 강제집행

유효한 판결·조정서·중재판정 등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법정 기한 내에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신청기간은 2 년이며, 법률문서에 이행기간이 정해져 있

으면 그 이행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하고, 분할이행이 정해져 있으면 마지막 회차 이행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한다.

집행 절차에서 법원은 피집행인의 예금·채권·주식 등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동결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신용불량 피집행인 명단 등재, 고액소비 제한, 사법경매가 병행될 수 있으며, 고액소비 제한과 출국제한은 회사의 법정대표자·주요 책임자 개인에게 내려지기도 하여 실무상 상당한 압박 수단이 된다. 채권자도 법원의 재산조회 결과 외에도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신규 수주, 관계회사 거래, 지분변동, 제 3 채무자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해야 한다⁴. 한편 소 제기 전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하기 어려워 기업정보 공시 사이트 등을 통한 간접 조회에 의존하게 되지만, 소 제기 후에는 법원에서 조사령(調査令)을 발급받아 부동산 등기센터, 차량관리소 등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시점별로 활용 가능한 수단을 파악해 두어야 한다.

3. 계약상 장치

가. 당사자와 인감

상대방의 통일사회신용코드와 법정명칭, 서명권한, 공식 인감을 확인한다. 특히 상대방과 납품처의 실제 주체가 다르면 보증책임 또는 연대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나. 관할 또는 중재

소송·중재 중 하나를 확정적으로 정한다. '소송 또는 중재로 해결한다'는 선택형 약정이나 중재기관을 특정하지 않은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중재를 택한다면 해당

⁴ 법원이 현 단계에서 집행 가능한 재산을 조회하지 못하여 해당 집행절차를 종결(终结本次执行程序)하더라도, 채무자의 이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는 새로운 재산을 발견하면 집행재개를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신청은 집행신청 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장기 미회수 건은 정기적인 자산 모니터링과 단서 기록이 중요하다.

기관의 표준조항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한국 법원 판결의 중국 내 승인·집행은 여전히 드문 반면 중재판정의 집행은 실무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한국에서의 분쟁해결을 원한다면 소송보다 중재 약정이 합리적이다.

다. 지급·이자·통화

검수·지급기한과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 지급통화, 세금·수수료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담보와 보증기간

보증방식·범위·기간을 명시하고 담보의 등록·등기 등 대항요건을 갖춘다.

마. 증거와 통지

발주·검수·이의·정산 절차, 이메일의 송달 효력, 주소변경 사전 통지와 송달 간주를 약정한다.

바. 준거법

준거법 약정이 없으면 한중 간 물품매매에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이 우선 적용된다. CISG가 규율하지 않는 사항은 중국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중국의 국제사법상 법률적용 규칙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되며,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제 41 조에 따라 계약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의무를 이행하는 당사자의 상거소지법 또는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이 적용된다.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정하더라도 분쟁을 중국에서 해결하는 경우 그 내용을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므로, 실무적으로 분쟁해결지와 준거법은 묶어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상해대표처의 관련 업무 사례

■ [채권 추심 관련 업무 사례]

- 수출입은행을 대리하여 대출금 회수에 대한 소송 및 자문 제공 — 한국법인의 중국 내 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대출원금과 이자를 100% 회수 (중국 강소성 소주시 국제상사중재법정의 첫 케이스, 2020 년 10 대 섭외금융사건 선정)
- 국내 종합상사를 대리하여 중국 에너지회사를 상대로 랴오닝성 다렌시 중급인민법원에서 대한민국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사건을 수행하여 판정금 전액을 회수
- 상하이 소재 건설공정회사를 대리하여 중국 건설회사와의 시안중재위원회 중재에서 화해를 성사시키고 대금 전액을 회수
- 한국 콘텐츠 회사를 대리하여 상하이 소재 문화발전회사와의 SHIAC 중재에서 화해를 성사시키고 대금 전액을 회수

02.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을 위한 EU CSDDD 대응 가이드

— EU는 멀어도, 실사는 코앞입니다 —

서론

EU CSDDD(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는 기업으로 하여금 자사뿐 아니라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완화하도록 요구하는 EU의 지침입니다. 2024년 제정되었고, 2026년 Omnibus I 패키지를 통해 적용 대상과 시점 등 주요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EU 기업 및 EU 역내 매출이 큰 역외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직접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사 의무의 범위는 기업 자신에 그치지 않고 공급망 전반, 즉 협력사와 그 협력사까지 포괄하기 때문에, EU 대기기업의 공급망에 속한 한국 기업(및 그 중국 생산법인)은 실사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전자·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된 산업의 기업이라면 이 실사와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시리즈는 이러한 공급망 편입 기업, 특히 중국에 생산법인을 둔 한국 기업을 위해 총 3편으로 구성됩니다. 제1편에서는 실사에 앞서 알아두어야 할 CSDDD의 기본 내용과 유의사항을 다룹니다. 이어 제2편과 제3편에서는 저희가 실제 실사 과정에서 여러 기업에 공통적으로 확인했던 노동 이슈들을 중심으로, 여성 근로자 보호제도(제2편)와 근무시간·파견근로자 제도(제3편)를 각각 살펴봅니다.

1. EU CSDDD란 무엇인가

CSDDD는 EU가 2024년 제정하고 2026년 개정(Omnibus I)한 지침으로, 기업으로 하여금 자사뿐 아니라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환경 리스크를 식별·예방·완화하도록 요구합니다.

대상	기준
EU 역내 기업	종업원 5,000명 초과 & 전 세계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
EU 역외 기업	EU 역내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
프랜차이즈/라이선스 모델	- EU 역내 기업: EU 내 로열티 7,500만 유로 초과 및 전 세계 순매출 2억 7,500만 유로 초과 - EU 역외 기업: EU 내 로열티 7,500만 유로 초과 및 EU 역내 순매출 2억 7,500만 유로 초과

직접 적용 대상이 되는 한국 기업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실사의 범위는 기업 자신에 그치지 않고 "활동사슬(chains of activities)" 전반, 즉 직접·간접 비즈니스 파트너까지 포괄합니다. EU 대기기업의 협력사, 혹은 그 협력사의 협력사라면 실사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자동차·전자·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에 깊숙이 편입된 산업의 한국 기업, 그리고 그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중국 법인은 사실상 실사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시점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회원국의 국내법화 기한은 2028년 7월 26일이며, CSDDD에 따른 주요 의무는 2029년 7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별도의 연례보고 의무는 **해당 의무가 적용되는 기업에 대하여 2030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즉, 실사를 했다는 사실과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시점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공표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실사를 처음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어느 영역에서 리스크가 확인될지를 파악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고, 발견된 문제는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 실사(공식 실사) 전에 회사의 현재 수준을 가늠해보는 **예비 진단(readiness assessment)**

단계를 권고드립니다. 정식 실사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회사·협력사의 인권·환경·안전 체계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미리 점검해두면, 실제 공표 시점이 닥쳤을 때 허둥대지 않고 준비된 상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유가 있어 보이는 이 시간이, 사실은 가장 값진 준비 기간입니다.

2. 중국 법인이 있다면 함께 살펴야 할 리스크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중국에 생산법인을 둔 기업이 EU CSDDD에 대응하여 실사를 수행하는 경우, 그 실사 행위 자체가 중국의 별도 법령과 맞물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실사 과정에서는 근로자 인사기록, 인터뷰 내용, 협력사 정보, 생산·환경 관련 자료 등이 수집됩니다. 이 자료를 한국 본사나 EU 고객사와 공유하기 위해 중국 밖으로 이전하는 순간, 데이터안전법·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 이전 절차(사전 안전평가, 표준계약 체결, 인증 등)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국외이전에는 사전 고지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추가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별 동의 필요 여부와 데이터 국외이전 안전평가·표준계약·인증 등의 절차 적용 여부는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국외이전 목적·규모 및 정보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료 요청·인터뷰·현장점검 등 정보 수집 활동 자체도 중국 법령상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시행된 공급망안전규정은 중국 법령을 위반한 방식의 조사·정보수집 활동을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바꿔 말하면 CSDDD에 따른 실사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정보수집·처리·이전 방식이 중국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실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로로" 수집·이전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행히 이는 "실사를 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수행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데이터의 수집, 이전 및 처리 과정을 중국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영역은 EU 규범만을 기준으로 검토할 경우 간과되기 쉬운 부분입니다. 중국은 개인정보 및 데이터 이전에 관한 독자적인 규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중국 법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사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무엇을 기준으로 점검하는가

CSDDD 기반 실사는 크게 인권 및 노동, 윤리, 환경, 안전 네 가지 영역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각 영역의 구체적인 점검 항목은 기업의 사업 특성, 산업 분야 및 실사 목적에 따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노동	근로시간과 휴게, 임금 지급 체계, 차별금지, 모성보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공급망 내 협력사 인권 리스크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윤리	개인정보의 수집·보유·파기 및 접근 권한 관리,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절차 등이 핵심 점검 대상입니다.
환경	온실가스 배출 관리, 대기오염물질 관리, 폐기물(특히 위험폐기물)의 보관·처리 기준 등을 점검합니다.
안전	개인보호장비(PPE)의 지급·관리 상태, 환기 시스템 등 작업환경의 물리적 안전 수준을 확인합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는 관련 정책과

내부 규정에 필요한 원칙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그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근로자 및 현장 관계자의 실제 경험이 문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문서 검토, 인터뷰, 현장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ESG 실사의 핵심 목적입니다.

또한 ESG 실사는 단순히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국제 기준을 토대로 각 점검 항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법률적 검토와, 해당 기준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무적 검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두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형식적인 적합성 확인을 넘어, 기업의 실질적인 리스크를 발견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왜 전문가와 함께해야 하는가

CSDDD 대응은 법률 검토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EU 규범에 대한 이해, 중국 현지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실제 실사 현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실무 감각까지 동시에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어느 한쪽만 아는 자문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최근 국내 대기업의 ESG 전담부서와 함께 중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ESG 실사에 직접 참여하여, 앞서 소개한 네 가지 영역이 현장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점검되고, 어떤 사항들이 실제 개선 과제로 지적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편부터는 이러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네 가지 영역 중 노동 분야에서 기업들이 실제로 자주 지적받는 이슈와 대응 방안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제2편 예고

- 여성 근로자 휴가제도 — 출산·수유기·육아·유산휴가의 전국 기준과 지역별 편차
- 임신기 근로조건 — 연장근로·야간노동 금지, 위험작업 배치 제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 성희롱 방지 — 중국법이 요구하는 조치와 사내 신고채널 정비 기준

▣ 주요 업무 사례

- 국내 대기업 H 사, S 사 중국 생산법인 대상 EU CSDDD 기반 인권·환경 실사 전 과정 수행 및 개선조치 자문
- 국내 다수 대기업 중국 법인 대상 노무 분쟁 자문
- 국내 다수 대기업 중국 법인 대상 노무, 개인정보보호 등 컴플라이언스 자문

■ 외부 기고 ■

01. 중국 '저명상표'는 훈장이 아니라 방패다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

2026.07.09)

(손덕중 변호사) 중국에서 저명상표는 미리 등록해 둘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구체적 상표 분쟁에서 필요할 때 개별 사건별로 인정받는 사실상의 지위이며, 등록 저명상표는 비유사 상품까지, 미등록 저명상표는 원칙적으로 동일·유사 상품 범위에서 보호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등록 여부에 따라 보호범위에 차이가 있다. K-패션 브랜드는 정식 진출 전에 한류 콘텐츠와 SNS 를 통해 인지도가 먼저 형성되고 상품군과 브랜드 표지(중국어 음역명, 로고, 매장명 등)가 빠르게 확장되는 특성상 상표 브로커의 선점과 모방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저명상표 인정을 뒷받침할 판매·광고·권리행사 증거를 평소부터 체계적으로 축적해 두어야 한다. 다만 저명상표 전략은 상표 등록 전략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핵심 표장의 선제적 출원과 광범위한 상품류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2027 년 1 월 시행되는 신 상표법이 미등록 저명상표 보호를 확대하되 이의신청 기간을 3 개월에서 2 개월로 단축하는 등 절차 요건도 강화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링크:

https://overseas.kita.net/sh/chinaMarketReport/marketReportDetail.do;JSESSIONID_osbranch=4E99B7B91F843A50DA70587F6EDC9772.Hyper?no=40458&tableType=1

02. “계약서보다 ‘실질’을 보라”...중국 주재 한국 임직원의 노동관계 종료 실

무 (월간노동법률 2026.7.13)

(손덕중 변호사) 중국 주재 한국 임직원의 노동관계를 종료할 때는 주재원의 고용관계가 파견형, 휴직형, 전직형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하며, 이는 형식적 서류가 아니라 임금 지급 주체·4대 보험 적립 주체·인사권 행사 주체 등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 많은 기업들은 본사 퇴직 처리 등 형식만 갖추면 한국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벗어난다고 안심하지만, 실질이 본사 중심으로 유지된 경우 한국 법원이 본사 근로관계의 존속을 인정해 부당해고 분쟁에 직면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종료 절차의 적법성 판단이 형식과 달라지는 이유는 한국의 엄격한 해고 정당성·절차 요건과 중국 노동계약법상 한정된 해지 사유 체계라는 양국 노동법제의 구조적 차이에서 비롯된다.

링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0&gopage=1&bi_pidx=39316&sPrm=Search_Text\\$\\$%uC190%uB355%uC911@@keyword\\$\\$%uC190%uB355%uC911@@noidx\\$\\$@@pmode\\$\\$N](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0&gopage=1&bi_pidx=39316&sPrm=Search_Text$$%uC190%uB355%uC911@@keyword$$%uC190%uB355%uC911@@noidx$$@@pmode$$N)

■ 최신 법령/판례 ■

1. 중국인민은행·국가외환관리국 「다국적기업의 위안화 및 외화 국경 간 자금 집중운영 업무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关于跨国公司本外币跨境资金集中运营业务有关事宜的通知), 2026.09.14. 시행 예정

「통지」는 중소 규모 다국적기업의 업무 수행 지원 확대, 다국적기업의 위안화 및 외화 국경 간 자금 집중·조달의 편의성 제고, 업무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특히 「통지」는 기존 다국적기업의 위안화 및 외화 국경 간 자금 집중운영 시범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관 기업이 자유무역시험구 내에 등록된 경우에는 자금풀(pool) 구축 요건을 추가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구성원 기업의 외채 및 해외대출 한도를 집중 관리하고, 다국적기업이 자율적으로 자금 집중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나의 계좌를 통해 위안화 및 외화 자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룹 차원의 자금 통합 운용과 구성원 기업의 유연한 자금 사용을 지원하고, 자국통화의 우선적 사용을 장려할 예정입니다.

2.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견수렴안)」(大型个人信息处理者个人信息保护规定 (征求意见稿)), 2026.09.07 의견 제출 마감

「의견수렴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의 인정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 해당 여부는 ▲1,000 만 명 이상의 자연인 개인정보 처리 여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중요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여부 또는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처리 활동이 국가안보, 경제 운영, 사회 안정, 공중보건 및 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암호화, 비식별화, 접근통제, 익명화 등의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인터넷 신원 인증 공공서비스의 활용을 허용하고, 데이터 라벨링·식별 기술의 사용 및 개인정보 보호

인증 취득 등을 장려하여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3.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공안부 「소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간소화 조치 규정」(小型个人信息处理者个人信息保护简化措施规定), 2026.09.01 시행 예정

「규정」은 소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이행에 관한 간소화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규칙의 제정·공개, 개인정보 처리 관련 고지의무 이행,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취득,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요청 접수 및 개인정보 삭제 등에 관한 간소화 조치를 규정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컴플라이언스 감사, 개인정보 보호 영향평가, 개인정보 보호 관리제도 구축 및 개인정보 안전사고 발생 시 구제조치와 통지의무 이행 등에 대해서도 간소화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하여 처벌을 면제하거나 경감·감경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관련 부서가 소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장려했으며, 규정 위반 시의 법적 책임도 명확히 했습니다. 동 「규정」은 2026 년 9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상해 사무소